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1차)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신발산업 (예비)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내에 창업공간을 마련하여, 입주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원스톱 신발허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01월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1.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시설개요

#### 건축개요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주 용 도	공장(지식산업센터)	건 폐 율	35.02%
지역지구	전용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용 적 율	161.62%
대지면적	12,674.5㎡	주차대수	164면(법정 161%) ※ 확장형주차49, 장애인주차5
건축면적	4,448.64㎡	규 모	지상6층
연 면 적	20,484.08㎡	최고높이	30.4m
구조하중	1~4층:1.2ton/㎡, 5~6층:0.6ton/㎡	층 고	1~3층: 5.5m, 4~6층: 4.0m
편의시설	구내식당, 신발인가배, 회의실, 세미나실, 기술지원실 등	승 강 기	화물용2대(5톤), 일반용3대, 리프트 1대(1~3층까지)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43번길 235

### 2.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예비(신발관련)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신발기업

#### 모집내용

○ 1층 cube 사무실(4개실)

□ 임대료 및 기타사항

○ 지원동 1층 사무실(cube)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지원동 1층 cube	면적(m <sup>2</sup> )			임대보증금	월차임(a)	관리비(b)	합계 (a+b)	입주가능일
	전용	공용	합계					
cube1호	6.34	3.07	9.41	592,000	44,900	14,300	59,200	2026.08.12. 이후
cube2호	6.34	3.07	9.41	592,000	44,900	14,300	59,200	2026.05.27. 이후
cube3호	6.34	3.07	9.41	592,000	44,900	14,300	59,200	즉시
cube6호	6.34	3.07	9.41	592,000	44,900	14,300	59,200	2026.04.21. 이후

※ 우리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임대공간 변경될 수 있음

- 임대기간 : 2년 ▶ 계약만료 시점 창업기업일 경우 심의를 통해 최대 2회(총 6년) 연장가능
- 임대보증금 :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합산액의 10개월분
- 각 호실별 개별 냉·난방 시설 구비 및 책상·의자 2개씩 제공
- 수도광열비(고정금액 부과)
  - 큐브오피스(호실당 35,000원/부가세별도)
  - 큐브(호실당 12,000원/부가세별도)
- 기타사항
  - 주차관리비는 “허브센터 관리규정” 에 따름

### 3. 입주대상

□ 입주관리 방침

○ 관련근거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의거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31호(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설임대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 동 법 시행령 제7조 1항, 제14조, 제31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3항, 제22조

○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신발 산업	C.15. 신발 제조업	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1521	
		-	구두류 제조업	15211
		-	기타 신발제조업	15219
	G.46 신발 유통업	15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	
		461 신발 중개업	46103	
		464 신발 도매업	4642	
신발유관업종	474 신발 소매업	4742		
	디자인업, 도소매중개업, 무역·수출업, 제품개발업, 연구컨설팅업, 지원 및 학술연구기관, 신발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 등		-	

○ 입주제한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자 및 입주기업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자격

- 예비(신발관련)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신발기업
- 공동사항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입주 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로 창업기업 본사 이전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 입주계약 및 시기

- (입주계약) 입주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계약만료 도래 호실의 경우 입주 가능일을 기준 30일 전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시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도래 호실의 경우 입주가능일을 기준으로 함

## □ 가점사항

- 예비창업자(신발관련 업종 창업 희망자)(가점 1점)  
※ 선정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必

## 4. 신청방법 및 절차

### □ 접수방법

- 제출서류 교부 :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공고.공지 ⇒ 사업공고
- 신청서류
  - 접수기간 : 2026. 01. 16.(금) ~ 2026. 01. 29.(목), 12: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 [sgkwon@btp.or.kr](mailto:sgkwon@btp.or.kr) ※접수처를 통한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문의처로 접수완료 여부 확인 필요)
  - 문의 :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 (☎051-317-8502)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 추진절차

○ 심사방법

-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세부 평가결과는 미공개)
- 선정평가는 신청기업별 사업계획서 기반 PT 또는 비대면 서면심사 실시

○ 세부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비 고
입주신청서 제출	• 입주신청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업 → 허브센터
대면(PT) 또는 서면심사	• 입주신청서 서류 기재사항 검토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 입주심의 결과 개별통보	허브센터
계약체결	• 입주 계약 체결	허브센터
입주	• 허브센터 창업공간 입주 * 입주 후 제출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음	허브센터 ↔ 기업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재무제표 및 기타 인증, 자격에 관한 서류 등

구 분		
제출구분	구 비 서 류	제출수량
입주신청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DF파일 각 1부
부속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최근 재무제표 1부 (해당업체 해당)	
	각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한함)	

□ 심사기준

구 분		
심사절차	평 가 항 목	
대면평가(PT) 또는 서류심사	기업현황	대표자 전문성
		추진사업 현황 및 성과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현황
		특허, 인증 확보 현황
	사업화 계획	입주 동기 및 목표
		기술 및 제품 개발 전략
		사업화 전략
		고용 및 매출 달성 계획

- 붙임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참고 1**    큐브 오피스(CUBE OFFICE) 도면



**참고 2**    큐브 (CUBE) 도면

